[서식 예] 입양취소청구의 소(부부동반입양에 위반)



소 장

원 고 ㅇ ㅇ ㅇ(ㅇㅇㅇ)

1900. 0. 0. 생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

주소 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번지(우편번호)

피 고 1. 김 \triangle $\triangle(\triangle \triangle \triangle)$

1900. 0. 0.생

 $2. \circ] \triangle \triangle (\triangle \triangle \triangle)$

1900. 0. 0. 생

위 피고 김△△는 미성년자이므로

법정대리인 친권자 🔲 🔲

위 피고들 및 법정대리인의 등록기준지 및 주소 : 원고와 같음

입양취소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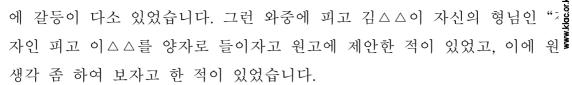
청 구 취 지

- 1. 피고 김△△와 피고 이△△사이에 19○○. ○. ○. ○○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 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피고 김△△과 19○○년도에 결혼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.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원고와 피고 김△△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 관계로 부부간



2. 그런데 피고 김△△은 위 제1항의 제의에 원고가 동의한 걸로 알고서, 원고에 게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고 이△△를 원고와 피고 김△△의 양자로 입양하였던 것입니다.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이△△와의 양모자관계가 민법상 입양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론으로 하고, 피고 김△△과 피고 이△△와의 양부자관계는 민법 제874조의 위반으로 입양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△△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입양관계증명서

1.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

1.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2통

1. 납부서 1통

 20 ○ ○ 년
 ○ 월
 ○ 일

 원
 고
 ○
 ○
 ○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	ork
제출법원	양부모 중 1인의 보통 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 척 기 간 ※ 아래(1)참조
제기권자	 ・미성년자: 양부모, 양자,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 ・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없이 양자: 동의권자 ・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: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 ・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양자: 배우자 ・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: 양친자의 타방 ・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: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
상 대 방	· 양친자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,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 법 규
불복절차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
및 기간	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
비 용	・인지액: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
입양취소 사 유	 입양이 제866조, 제869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제2호, 제870조제1항, 제871조제1항, 제873조제1항, 제874조를 위반한 때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

※(1) 제 척 기 간

- 1. 미성년자가 한 입양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
- 2.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경우는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
- 3.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 내
- 4.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없는 양자와 부부공동입양에 위반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
- 5. 양친자의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양자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
- 6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 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.